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업종	연 간 매 출 금 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2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20 초과 30 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30 초과 5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8,000 초과 10,000 이하	367
27		10,000 초과	404